

# 13.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200號 1992. 12. 31

## 1. 개정이유

주택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실수  
요자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고,  
주택건설사업자의 도산이나 부실시공으  
로 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며, 주택산업  
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 
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이  
1992년 12월 8일 공포되어 1993년 3월  
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, 이의 시  
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기타  
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 
고자 함.

## 2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가. 현재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기  
준등 자본금이 1억원(개인은 자산  
평가액 2억원)이상으로 되어 있으  
나, 앞으로는 3억원(개인은 자산평  
가액 5억원)이상으로 강화하여 주  
택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임.

나.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 
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

이 정함.

다. 현재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과  
절차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의 적용  
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 
법에서 직접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
요건과 절차를 정하고, 주택상환사  
채의 발행총액은 건설부장관이 승  
인한 총액으로 하며, 사채모집과 실  
제 응모총액이 승인된 총액에 미달  
하는 경우에는 응모된 금액이 총액  
의 60퍼센트이상인 되는 경우에 건  
설부장관이 발행총액으로 변경승인  
을 할 수 있도록 함.

라. 현재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주체가  
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 
건설비율을 주택의 건축연면적 50  
퍼센트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나  
앞으로는 이를 80퍼센트 범위로  
상향 조정하여 서민들을 위한 소형  
주택이 보다 많이 건설될 수 있도  
록 함.



